

1. 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2부 와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
2.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(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 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·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하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위해관리계획서에 제출해야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여 검토를 생략한다.

1. 제12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
2. 제13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목록,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
3. 제14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사용하여서는”을 “사용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54조 중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”를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2018년 1월 1일”을 “2021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 환경부고시제2020-205호

「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8-7호, '18.1.11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0호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니한”을 각각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”를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장외영향평가서에 작성해야할 내용 중 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

1.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

2. 사업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(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·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

⑤ 제4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할 수 있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장외영향평가서에 제출해야 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여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한다.

1. 제16조에 따른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
2. 제17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
3. 제18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 등
4. 제19조에 따른 공정정보,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

제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타 인·허가 기관과의 협조) ① 안전원장은 신규 시설의 인·허가 등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기관과 협조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타 인·허가 서류 등을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다.

②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송부·제출받은 경우,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별표 4 제1호가목·나목에 해당하는 내용 중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.

1.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2부와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
2.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(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·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하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장외영향평가서에 제출해야 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여 검토를 생략한다.

1. 제16조에 따른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
2. 제17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
3. 제18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 등
4. 제19조에 따른 공정정보,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

제17조 단서 중 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”를 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대상설비의 특성에 따라 제2조제11호에 명시된 기법 중”을 “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유·누출 사고 발생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예비위험 분석기법과 상응하는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”를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2018년 1월 1일”을 “2021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0-647호

중앙선 원주~제천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94호(2011.07.28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32호(2012.07.23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709호(2014.11.26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661호(2016.10.11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239호(2017.04.24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708호(2017.11.16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64호(2019.02.07.)로 고시된 중앙선 원주~제천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업의 명칭 : 중앙선 원주~제천 복선전철 사업

2. 사업의 개요

○ 사업목적 (변경없음)

-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~덕소~원주간과 제천~도담간 복선전철화 추진에 따른 복선 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 시행

- 수송시간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 절감

-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함

○ 사업내용 (변경없음)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	
연 장	44km095.30	44km095.30	변경없음	
면 적	1,365,643.5m ²	1,365,643.5m ²	"	
노반형식	토공	9km719.37	9km719.37	"
	터널	30km640.00(11개소)	30km640.00(11개소)	"
	교량	3km735.93(15개소)	3km735.93(15개소)	"
궤 도	본선 및 정거장 1식	본선 및 정거장 1식	"	
정거장 (5개소)	신설 : 2개소 (남원주정거장,운학신호장)	신설 : 2개소 (남원주정거장,운학신호장)	"	
	개량 : 3개소 (봉양정거장,제천조차장, 제천정거장)	개량 : 3개소 (봉양정거장,제천조차장, 제천정거장)	"	
전기설비	송전선로	3.961km	3.961km	"
	변전설비	4개소	4개소	"
	변전건물	4동	4동	"
	전차선로	232km	232km	"
	전력설비	54.23km	54.23km	"
신호설비	본선 및 정거장 1식	본선 및 정거장 1식	"	
통신설비	본선 및 정거장 1식	본선 및 정거장 1식	"	